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14,200,000	36,426,000
일반회계	1,004,100,000	30,123,000
특별회계	210,100,000	6,303,000
공기업특별회계	127,795,373	3,833,86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0,613,890	2,418,41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6,056,493	1,381,69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24,990	33,750
기타특별회계	82,304,627	2,469,139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962,378	88,87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47,409	97,422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932,724	27,982
도농공동지사업특별회계	453,284	13,599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541,173	196,235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323,876	39,716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417,799	162,534
주차장특별회계	4,810,000	144,30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69,640	5,08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1,858,461	55,754
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9,348,230	280,447
배방월천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1,383,000	641,490
아산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347,295	70,419
아산신정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891,793	176,754
아산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446,264	313,388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사업특별회계	5,171,301	155,13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548,96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9,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회계연도중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